#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049 발의연월일: 2025. 4. 23.

발 의 자: 정춘생·황운하·서왕진

김선민 · 이해민 · 신장식

김재원 • 백선희 • 차규근

김준형 의원(10인)

#### 제안이유

현행 대통령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단순다수대표제를 선택하고 있음. 단순다수대표제의 경우 사표가 과도하게 발생하여 당선인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대통령선거의 경우 헌법에서 후보자가 1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득표율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대통령 당선인이 되기 위한 득표 기준을 정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음.

이에 대통령 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당선인이 없는 때에는 득표비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와 다음 순위의 후보자가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되, 당선인이 없는 때에는 득표비율 (후보자가 얻은 득표수를 유효투표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함)이 가장 높은 후보자와 다음 순위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결선투표에서 득표비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안 제187조제1항, 제191조제1항, 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9 신설 등).
- 나. 결선투표일은 선거일 후 7일이 되는 날로 함(안 제194조의6 신설).
- 다. 결선투표운동은 선거공보(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후보자등의 방송연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한정함(안 제194조의8 신설).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 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 2. "결선투표"란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어 득표비율(후보자가 얻은 득표수를 유효투표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후보자와 다음 순위의 후보자(다음 순위의 득표비율을 얻은 후보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후보자 전부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다시 투표하여 당선인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6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후보자가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때에는 선거공보를 전자문 서로 변환한 자료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 회가 선거공보를 발송하는 때에는 선거공보 전자문서 자료를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1조제1항제1호 중 "11回 이내"를 "11회 이내(결선투표운동기간 중각 1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回 이내"를 "2회 이내(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결선투표의 경우 결선투표운동기간 중 각 1회)"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5回 이내"를 "5회 이내(시·도지사선거 결선투표의 경우 각 1회 이내)"로 한다.

제72조의 제목 "(放送施設主管 候補者演說의 放送)"을 "(방송시설주관후보자연설의 방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選擧運動期間중 政黨"을 "선거운동기간 중 정당"으로, "選擧人"을 "선거인에게 알리거나 결선투표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선거인"으로 한다.

제82조의2제1항제1호 중 "후보자"를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의 후보자"로, "이상"을 "이상(대통령 결선투표의 경우 결선투표운동기간 중 1회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이상"을 "이상(시·도지사선거 결선투표의 경우 결선투표운동기간 중 1회 이상)"으로 하며, 같은조 제3항 전단 중 "장선거의 후보자를"을 "장 선거의 후보자,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결선투표의 후보자"로 한다.

제150조의 제목 "(投票用紙의 政黨·候補者의 揭載順位 등)"을 "(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게재순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결선투표를 하는 때에는 선거일에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보자의 게재순위별로 결선투표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한다.

제187조제1항 본문 중 "다수"를 "과반수"로 한다.

제191조의 제목 "(地方自治團體의 長의 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다수"를 "과반수"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2장의2(제194조의2부터 제194조의11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장의2 결선투표

- 제194조의2(결선투표 실시) ①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때에는 결선투표를 실 시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최고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 제194조의3(결선투표 공고) ① 대통령 선거에서 개표결과 결선투표를 하게 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국회의장에게 통 지하고 결선투표를 한다는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개표결과 결선투표를 하게 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장에게 통지하고 결선투표를 한다는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결선투표의 공고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제194조의4(결선투표기간) 결선투표기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결선투표를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선거 일 후 7일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제194조의5(결선투표운동기간) 결선투표운동기간은 결선투표기간 개시일부터 결선투표일 전일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
- 제194조의6(결선투표일) 결선투표일은 선거일 후 7일이 되는 날로 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 제194조의7(결선투표를 위한 선거인명부)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를 위하여 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선거인명부(거소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는 결선투표에도 효력이 있다.
- 제194조의8(결선투표운동) ① 결선투표운동이란 결선투표운동기간 동 안 이 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거운동을 말한다.
  - ② 결선투표운동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에 한정한다.
  - 1. 제65조에 따른 선거공보. 이 경우 제65조제6항 후단에 따른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에 의한 방법을 말 한다.
  - 2. 제71조에 따른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 3. 제82조의2에 따른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 제194조의9(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의 당선인 결정) ① 중앙선거관리위 원회는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에서 득표비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 퇴 또는 사고 등으로 후보자가 1명이 된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 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② 득표비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따라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제 2항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고하고, 지 체 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④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에 관하여는 제187조제4항을 준용한다.
- 제194조의10(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결선투표의 당선인 결정) 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결선투표에서 득표비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퇴 또는 사고 등으로 후보자가 1명이 된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② 득표비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 장이, 제2항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지방의회의장이 이를 공고하고,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결선투표에 관하여는 제187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 본다.
- 제194조의11(결선투표 및 개표) 결선투표의 투표 및 개표에 관하여는 제10장 및 제11장을 적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선투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부터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아 혂 행 개 정 제3조(선거인의 정의) 이 법에서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 1.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결선투표"란 대통령과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유 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 자가 없어 득표비율(후보자가 얻은 득표수를 유효투표 총수 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후보자와 다음 순위의 후보자(다음 순 위의 득표비율을 얻은 후보자 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그 후보 자 전부를 말한다)를 대상으 로 다시 투표하여 당선인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65조(선거공보) ① ~ ⑤ (생 제65조(선거공보) ① ~ ⑤ (현행 략) 과 같음) ⑥ 선거공보의 제출과 발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후단 신 -----. 이 경우 설> 후보자가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1. • 2. (생략)

⑦ ~ ⑭ (생 략)

제71조(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① 候補者와 候補者가 지명하는 演 說員은 所屬政黨의 政綱・정책이나 候補者의 政見 기타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발표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에 의하여 選擧 運動期間중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施設[第70條(放送廣告)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施設을 말한다. 이하이 條에서 같다]을이용한 演說을 할 수 있다.

## 1. 大統領選舉

候補者와 候補者가 지명한 演 說員이 각각 1回 20分 이내에 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 別 각 11回 이내

때에는 선거공보를 전자문서로
변환한 자료를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
회가 선거공보를 발송하는 때에
는 선거공보 전자문서 자료를
<u>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u>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
개하여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⑦ ~ ⑭ (현행과 같음)

$(7) \sim (2)$	) (연	앵꾸	任告)	
제71조(후	보자	등의	방송연설)	1

1

I.	 	_		

---- <u>11회 이내(결선투표운동</u>

- 2. (생략)
- 3. 地域區國會議員選舉 및 自治區・市・郡의 長 選舉候補者가 1回 10分 이내에서地域放送施設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別 각 2回이내
- 4. (생략)
- 5. 市・道知事選舉
   候補者가 1回 10分 이내에서
   地域放送施設을 이용하여 텔 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別 각 <u>5</u>
   回 이내
- ② ~ ③ (생 략)

第72條(放送施設主管 候補者演說의 放送) ① 텔레비전 및 라디오 放送施設[第70條(放送廣告)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放送施設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그의 부담으로 第71條(候補者 등의 放送演說)의 規定에의한 候補者 등의 放送演說외에

<u>기간 중 각 1회)</u>
2. (현행과 같음)
3
<u>2</u>
회 이내(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 결선투표의 경우 결선투
표운동기간 중 각 1회)
4. (현행과 같음)
5
5
<u>o</u>
회 이내(시・도지사선거 결선
회 이내(시·도지사선거 결선 투표의 경우 각 1회 이내)
회 이내(시・도지사선거 결선
회 이내(시・도지사선거 결선         투표의 경우 각 1회 이내)         ② ~ ③ (현행과 같음)
회 이내(시・도지사선거 결선투표의 경우 각 1회 이내)② ~ ③ (현행과 같음)第72條(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
회 이내(시・도지사선거 결선투표의 경우 각 1회 이내)② ~ ③ (현행과 같음)第72條(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
회 이내(시・도지사선거 결선투표의 경우 각 1회 이내)② ~ ③ (현행과 같음)第72條(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
회 이내(시・도지사선거 결선투표의 경우 각 1회 이내)② ~ ③ (현행과 같음)第72條(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
회 이내(시・도지사선거 결선투표의 경우 각 1회 이내)② ~ ③ (현행과 같음)第72條(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

選舉運動期間중 政黨 또는 후보 자를 選舉人에게 알리기 위하여 候補者(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推薦政黨이 당해 選擧의 候補者중에서 선임한자를 말한다. 이하 제3항에서같다)의 演說을 放送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編輯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放送하여야 하며, 선거구단위로 모든 政黨 또는 候補者에게 공평하게 하여야한다. 다만, 政黨 또는 候補者가그 演說을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 ④ (생 략)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 중앙선 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 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대통령선거

<u>후보자</u> 중에서 1인 또는 수인 을 초청하여 3회 이상

선거운동기간 중 정당
선거인에게 알리거나 결선
투표운동기간 중 후보자를 선거
<u>୍</u> ପି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
1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의 후보
<u>자</u> <u>이상(대통령</u>

#### 2. (생략)

- ②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시·도지사선거 및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1. 시·도지사선거후보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1회 이상

# 2. (생략)

- ③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 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 군의 <u>장선거의 후보자를</u> 초청하 여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 또 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 회의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10 분이내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배 정하여야 한다.
- ④ ~ ⑭ (생 략)

결선투표의 경우 결선투표운
동기간 중 1회 이상)
2. (현행과 같음)
②
1
<u>이상(시·도</u>
지사선거 결선투표의 경우 결
선투표운동기간 중 1회 이상)
2. (현행과 같음)
③
<u>장 선거의 후보자, 자치구</u>
·시·군의 장 선거 결선투표의
후보자

- 第150條(投票用紙의 政黨・候補 ) 者의 掲載順位 등) ①・②(생 략)
  - ③ 候補者의 掲載順位를 정함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마감일 현재 國會에서 議席을 갖고 있는 政黨의 추천을 받은 候補者, 國會에서 議席을 갖고 있지 아니한 政黨의 추천을 받은 候補者, 無所屬候補者의 순으로 하고, 政黨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候補者登錄마감일 현재 國會에서 議席을 가지고 있는 政黨, 國會에서 議席을 가지고 있는 政黨, 國會에서 議席을 가지고 있는 작가 신설〉

## ④ ~ ⑩ (생 략)

第187條(大統領當選人의 決定・ 第公告・통지)①大統領選擧에 있어서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가有效投票의 <u>다수</u>를 얻은 者를當選人으로 決定하고, 이를 國會議長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150條(투표용지의 정당・후보
<u>자의 게재순위 등)</u> ①·② (현
행과 같음)
3
다만, 결선투표를 하는 때에는
선거일에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
보자의 게재순위별로 결선투표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한다.
④ ~ ⑩ (현행과 같음)
第187條(大統領當選人의 決定・
公告・통지) ①
<u>과반수</u>

다만, 候補者가 1人인 때에는 그 得票數가 選擧權者總數의 3 分의 1 이상에 달하여야 當選人 으로 決定한다.

#### ② ~ ④ (생 략)

- 第191條(地方自治團體의 長의 當 選人의 決定·公告·통지) ① 地方自治團體의 長 選舉에 있어 서는 選擧區選擧管理委員會가 有效投票의 <u>다수</u>를 얻은 者를 當選人으로 決定하고, 이를 당 해 地方議會議長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u>다만</u>, 最高得票者가 2 人 이상인 때에는 年長者를 當 選人으로 決定한다.
  - ② 삭 제
  - ③ (생 략)

<신 설>

<신 설>

② ~ ④ (현행과 같음)
第191條(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
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
<u>과반수</u>
<u>다만, 후보자가 1명인</u>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
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2장의2 결선투표
제194조의2(결선투표 실시) ① 대
통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
거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
은 후보자가 없는 때에는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최고득표자
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최고득표

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 한다.

제194조의3(결선투표 공고) ① 대통령 선거에서 개표결과 결선투표를 하게 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국회의장에게 통지하고 결선투표를 한다는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서 개표결과 결선투표를 하게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장에게통지하고 결선투표를 한다는 사실을 공고하여야한다.

③ 결선투표의 공고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칙으로 정한다.

제194조의4(결선투표기간) 결선투표기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결선투표를 공고한 날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후 7일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194조의5(결선투표운동기간) 결 선투표운동기간은 결선투표기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u>간 개시일부터 결선투표일 전일</u> <u>까지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u> <u>제194조의6(결선투표일) 결선투표</u>

일은 선거일 후 7일이 되는 날 로 한다. 이 경우 사전투표는 실 시하지 아니한다.

제194조의7(결선투표를 위한 선거 인명부)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 의 장의 선거를 위하여 제44조 에 따라 확정된 선거인명부(거 소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 는 결선투표에도 효력이 있다.

제194조의8(결선투표운동) ① 결 선투표운동이란 결선투표운동 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이루어 지는 선거운동을 말한다.

- ② 결선투표운동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에 한정한다.
- 1. 제65조에 따른 선거공보. 이 경우 제65조제6항 후단에 따 른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에 의한 방법을 말한다.
- 2. 제71조에 따른 후보자 등의방송연설
- 3. 제82조의2에 따른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 회

제194조의9(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의 당선인 결정)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에서 득표비율이 가장 높은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사퇴 또는 사고 등으로 후보자가 1명이 된 때에는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② 득표비율이 가장 높은 후보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따라 국 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후 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 정된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고하고,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④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에 관하

여는 제18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94조의10(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결선투표의 당선인 결정) 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 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결선투표에서 득표비율이 가장 높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장과 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퇴 또는 사고 등으로 후보자가 1명이 된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② 득표비율이 가장 높은 후보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관할선 거구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 으로 결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지방의회의장이 이를 공고하고, 지체 없이 당

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하여는 제10장 및 제11장을 적

용한다.